

의안번호	2203733
의 퇴 인	한병도 의원
회 답 일	2024. 9. 27.
추 계 번호	24F35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 4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의료법인, 재단법인, 지방의료원,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는 2025년 184억원, 2028년 184억원 등 2025년에서 2028년까지 4년간 총 736억원(연평균 18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의료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4년간 -656억원(연평균 -164억원)
 -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4년간 -30.4억원(연평균 -7.6억원)
 -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4년간 -9.6억원(연평균 -2.4억원)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4년간 -40억원(연평균 -10억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재산세, 2025~2028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의료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안 제38조 제1항)	-164	-164	-164	-164	-656	-164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안 제38조 제4항)	-7.6	-7.6	-7.6	-7.6	-30.4	-7.6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안 제38조의2)	-2.4	-2.4	-2.4	-2.4	-9.6	-2.4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안 제40조 제1항)	-10	-10	-10	-10	-40	-10
계	-184	-184	-184	-184	-736	-184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8조 제1항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	
2	안 제38조 제4항 (재단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재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	
3	안 제38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	
4	안 제40조제1항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38조 제1항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2	안 제38조 제4항 (재단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3	안 제38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4	안 제40조제1항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안 제38조제1항) 2018~2022년 의료법인의 부동산 취득·사용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불규칙하므로, 최근 5년(2018~2022년) 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최근 5년('18~'22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 -80.5억원
 - 최근 5년('18~'22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실적: -83.5억원
- (안 제38조제4항) 2018~2022년 재단법인(종교단체)의 부동산 취득·사용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불규칙하므로, 최근 5년(2018~2022년) 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최근 5년('18~'22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 -2.3억원

- 최근 5년('18~'22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실적: -5.3억원
 - 재단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되어 기존에 종교단체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 비해 지방세 감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2024년 신설된 일반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워 기존의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을 토대로 향후 세수효과를 추계
- (안 제38조의2) 2018~2022년 지방의료원의 부동산 취득·사용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감면실적이 크게 감소하였으므로, 최근 3년(2020~2022년) 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최근 3년('20~'22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 -0.3억원
 - 최근 3년('20~'22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실적: -2.1억원
 - 2021~2022년 재산세 감면실적이 없으나 동 기간 신규 지방의료원 취득이 발생하였으며, 기존에 지방의료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향후 재산세 감면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근 3년('20~'22년)간 감면액의 평균치를 적용
- (안 제40조제1항) 2018~2022년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의 부동산 취득·사용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불규칙하므로, 최근 5년(2018~2022년) 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최근 5년('18~'22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 -7.5억원
 - 최근 5년('18~'22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실적: -2.5억원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의료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안 제38조제1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의료법인 등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 취득세 감면율은 2016년까지 75%(시지역¹)은 0.15%p 세율경감하여 적용)

로 유지되다가, 2017년 이후 감면율 50%(시지역은 0.1%p 세율경감하여 적용)로 축소되고, 2021년 이후 감면율 30%(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40%) 적용

○ 재산세 또한 감면율 및 감면 범위가 축소

- 감면율은 2016년까지 75%로 유지되다가, 2017년 이후는 50%(단,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2021년 이후 60%로 감면율 상향)로 축소
- 2021년 이후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2021년 취득분은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감면, 2022년 이후에는 제한 조건 없음

□ (감면실적) 최근 5년('18~'22년) 의료법인 등의 의료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조정감면실적은 연평균 80.5억원 수준, 재산세 조정감면실적은 연평균 83.5억원 수준

○ (취득세) 감면율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감면율로 조정하여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으며, 연평균 80.5억원 수준

- (감면율 : 시지역) 2016년 이전: 0.15%p 감경세율 → 2017년~2020년: 0.1%p 감경세율 → 2021년 이후 : 30%. (취득세 일반세율 4%를 가정할 때 감면율로 환산하는 경우 2016년 이전: 37.5% → 2017년~2020년: 25% → 2021년 이후 : 30%)
- (감면율 : 기타지역) 2016년 이전: 75% → 2017년~2020년: 50% → 2021년 이후 : 30%

[표 2] 의료법인의 의료시설 취득세 감면 실적 : 2018~2022년

(단위: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감면액	81.0	74.3	84.0	136.0	68.2
건수	336	379	283	339	266
감면율 ¹⁾	(시지역)25 (기타)50	(시지역)25 (기타)50	(시지역)25 (기타)50	30	30
조정감면율 ²⁾	35.7	36.1	36.7	30	30
조정실적 ³⁾	68.1	61.7	68.7	136.0	68.2

주: 1) 시지역의 감면율은 취득세 일반세율(4.0%)적용을 가정하여 환산한 수치

2)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 세수 및 인구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평균 감면율 수치

3) 실제실적에 30/(연도별조정감면율)를 곱하여 현행 감면율(30%)로 환산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 (재산세) 감면세목조정 등에 따른 감면규모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기준으로 조정하여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은 83.5억원

－ (감면세목조정) 2021년부터 재산세도시지역분 감면 제외

[표 3] 의료법인의 의료시설 재산세 감면 실적 : 2018~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감면액	125.2	132.3	135.0	24.5	94.3
건수	4,153	4,173	4,182	1,400	3,269
조정실적 ¹⁾	95.4	100.7	102.5	24.5	94.3

주: 1) 현행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을 고려하여 2018~2020년 실적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여 조정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방법

- (취득세) 취득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18~'22년)간의 연평균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최근 5년간 평균 감면실적: 80.5억원

- (재산세) 재산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18~'22년)간의 연평균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최근 5년간 평균 감면실적: 83.5억원

(3) 추계결과

- 의료법인 등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25년 164억원, 2028년 164억원 등 2025년에서 2028년까지 4년간 총 656억원(연평균 16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재산세 2025~2028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의료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38조 제1항)	-164	-164	-164	-164	-656	-164
- 취득세	-80.5	-80.5	-80.5	-80.5	-322	-80.5
- 재산세	-83.5	-83.5	-83.5	-83.5	-334	-83.5

다.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안 제38조제4항)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 당초 종교단체(재단법인인 종교단체로 한정)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규정하다가, 2023.12.29. 법률 개정예에 따라 일반 재단법인에 대해서도 2024년부터 취득세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25%), 재산세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35%) 감면
- 단,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일반 재단법인에 대해 우대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옴
- (취득세) 취득세 감면율은 2020년까지 최대 40%(시지역 20%)로 유지되다가, 2021년 이후 감면율 30%(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40%)로 축소
 - 2020년까지는 감면율을 40%(시 지역 2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최대 감면율(기타지역 40%/시 지역 20%) 적용을 가정
- (재산세) 재산세 또한 감면율 및 감면 범위가 축소
 - 감면율은 2016년까지 75%로 유지되다가, 2017년 이후는 50%(단,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2021년 이후 60%로 감면율 상향)로 축소
 - 2021년 이후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2021년 취득분은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감면, 2022년 이후에는 제한 조건 없음

□ (감면실적) 2022년 기준 재단법인(종교단체)의 의료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조정감면실적은 연평균 2.3억원 수준, 재산세 조정감면실적은 연

평균 5.3억원 수준

- 일반 재단법인에 대한 감면조항은 2024년부터 시행되어 현재로서는 감면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실적만 살펴봄
- (취득세) 감면을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감면율로 조정하여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으며, 연평균 2.3억원 수준
 - (감면율) 2016년 이전: 75% → 2017년~2020년: 50% → 2021년 이후 : 30%

[표 5] 재단법인(종교단체)의 의료시설 취득세 감면 실적 : 2018~2022년

(단위: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감면액	1.1	0.4	3.6	4.6	1.7
건수	11	2	14	19	8
감면율	(시지역)20 (그 외)40	(시지역)20 (그 외)40	(시지역)20 (그 외)40	30	30
조정감면율 ¹⁾	28.5	28.9	29.3	30	30
조정실적 ²⁾	1.1	0.4	3.7	4.6	1.7

주: 1)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 세수 및 인구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평균 감면율 수치

2) 실제실적에 30/(연도별조정감면율)를 곱하여 현행 감면율(30%)로 환산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재산세) 감면규모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기준으로 조정하여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조정 감면실적은 5.3억원 수준
 - (감면세목조정) 2021년부터 재산세도시지역분 감면 제외

[표 6] 재단법인(종교단체)의 의료시설 재산세 감면 실적 : 2018~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감면액	4.7	6.3	7.4	1.5	11.2
건수	166	175	185	41	134
조정실적 ¹⁾	3.6	4.8	5.6	1.5	11.2

주: 1) 2021년 이후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2018~2020년 실적의 경우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조정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방법

- 재단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되어 기존에 종교단체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 비해 지방세 감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4년 일반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워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을 토대로 향후 세수효과를 추계

- (취득세) 최근 5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취득세 감면 실적은 증감이 불규칙하게 관찰됨을 고려하여 최근 5년('18~'22년)간의 연평균 실적(2.3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재산세) 최근 5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재산세 감면 실적은 증감이 불규칙하게 관찰됨을 고려하여 최근 5년('18~'22년)간의 연평균 실적(5.3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

(3) 추계결과

-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의 세수는 향후 4년간 총 30.4억원(연평균 7.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재산세 2025~2028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안 제38조 제4항)	-7.6	-7.6	-7.6	-7.6	-30.4	-7.6
- 취득세	-2.3	-2.3	-2.3	-2.3	-9.2	-2.3
- 재산세	-5.3	-5.3	-5.3	-5.3	-21.2	-5.3

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안 제38조의2)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 취득세 감면율은 2016년까지 100%로 유지되다가, 2017년 이후 감면율

75%로 축소

－ 단,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2021년 이후 85%로 감면을 상향

○ 재산세 또한 감면을 및 감면 범위가 축소

－ 감면율은 2016년까지 100%로 유지되다가, 2017년 이후는 75%로 축소(단,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2021년 이후 85%로 감면을 상향)

－ 2021년 이후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2021년 취득분은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감면, 2022년 이후에는 제한 조건 없음

□ (감면실적) 최근 5년간(2018~2022년) 취득세는 2018년 3.4억원에서 2022년 0.3억원으로 감면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재산세는 2021년 이후 감면실적이 없음

○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021년에는 실적이 없음

[표 8] 지방의료원의 의료시설 취득세 감면 실적 : 2018~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감면액	3.4	1.6	0.7	－	0.3
건수	14	5	10	－	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재산세) 감면세목 조정을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기준으로 조정하여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2018~2020년 평균 감면실적은 7.4억원이나 2021년 감면세목 조정 이후 감면실적이 없음

－ (감면세목조정) 2021년부터 재산세도시지역분 감면 제외

－ 지방의료원이 취득한 부동산이더라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므로 취득세 감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산세 감면액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표 9] 지방의료원의 의료시설 재산세 감면 실적 : 2018~2022년

(단위: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감면액	10.4	10.5	8.1	—	—
감면율	75	75	75	—	—
건수	43	42	37	—	—
조정실적 ¹⁾	7.9	8.0	6.2	—	—

주: 1) 현행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을 고려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방법

□ (취득세) 취득세는 최근 3년('20~'22년)간 감면액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18~2019년에 비해 2020년 이후 감면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최근 3년('20~'22년)간 감면액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향후 감면 규모 추정
- 최근 3년('20~'22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 0.3억원

□ (재산세) 재산세는 최근 3년('20~'22년)간 감면액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1~2022년 재산세 감면실적이 없으나 동 기간 신규 지방의료원 취득이 발생하였으며, 기존에 지방의료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향후 재산세 감면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근 3년('20~'22년)간 감면액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향후 감면 규모 추정
- 최근 3년('20~'22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실적: 2.1억원

(3) 추계결과

□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의 세수는 향후 4년간 총 9.6억원(연평균 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재산세 2025~2028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안 제38조의2)	-2.4	-2.4	-2.4	-2.4	-9.6	-2.4
- 취득세	-0.3	-0.3	-0.3	-0.3	-1.2	-0.3
- 재산세	-2.1	-2.1	-2.1	-2.1	-8.4	-2.1

마.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안 제40조제1항)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 취득세 감면율은 2016년까지 100%로 유지되다가, 2017년 이후 감면율 75%로 축소되고, 2021년 이후 감면율 50%로 축소
- 재산세 또한 감면율 및 감면 범위가 축소
 - 감면율은 2016년까지 100%로 유지되다가, 2017년 이후는 75%로, 2021년 이후는 50%로 축소
 - 2021년 이후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2021년 취득분은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감면, 2022년 이후에는 제한 조건 없음
-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국민건강 증진사업자는 다음과 같음
 -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 (감면실적) 최근 5년(2018~2022년)간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조정감면실적은 연평균 7.5억원 수준이며, 재산세 조정감면실적은 연평균 2.5억원 수준

- (취득세) 감면율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감면율로 조정하여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으며, 연평균 7.5억원 수준
 - (감면율) 2016년 이전: 100% → 2017년~2020년: 75% → 2021년 이후: 50%

[표 11]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실적 : 2018~2022년

(단위: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감면액	13.1	11.0	12.7	1.4	11.4
건수	14	12	10	7	15
감면율	75	75	75	50	50
조정실적 ¹⁾	8.7	7.3	8.5	1.4	11.4

주: 1) 감면액에 50/(연도별감면율)를 곱하여 현행 감면율(50%)로 환산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재산세) 감면규모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기준으로 조정하여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조정된 연평균 감면실적은 2.5억원 수준

- (감면율) 2016년 이전: 100% → 2017년~2020년: 75% → 2021년 이후: 50%
- (감면세목조정) 2021년부터 재산세도시지역분 감면 제외

[표 12]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실적 : 2018~2022년

(단위: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감면액	5.2	5.7	6.1	1.1	2.8
건수	126	127	134	39	67
감면율	75	75	75	50	50
조정실적 ¹⁾	2.6	2.9	3.1	1.1	2.8

주: 1) 감면실적에 50/(연도별감면율)를 곱하여 현행 감면율(50%)로 환산하고, 현행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을 고려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방법

- (취득세) 취득세는 최근 5년('18~'22년)간 감면액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감면율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감면율로 조정한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5년간 평균 조정감면액을 기준으로 추계
 -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조정감면실적: 7.5억원

- (재산세) 재산세는 최근 5년('18~'22년)간 감면액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감면율 등이 축소된 2021년 이후 조정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1.1~3.1억원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5년간 평균 조정감면액을 기준으로 추계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이 계속 발생함에도 재산세 감면액을 일정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음
 -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조정감면실적: 2.5억원

(3) 추계결과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의 세수는 향후 4년간 총 40억원(연평균 1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1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재산세 2025~2028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안 제38조의2)	-10	-10	-10	-10	-40	-10
- 취득세	-7.5	-7.5	-7.5	-7.5	-30	-7.5
- 재산세	-2.5	-2.5	-2.5	-2.5	-10	-2.5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